

##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9일

파 주 시 장

### 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

### 2.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및 「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
  -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변경(안 제6조제2항)
  -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관련 조항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(안 제7조제2항)

### 4. 개정조례안 : 별 첨

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의 입법예고란에 게시

### 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: 2026년 6월 18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팩스 등

다. 기재내용: 주소·성명·생년월일·연락 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: 파주시장(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)

- 주소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(우 10932)
- 전화: 031)940-8420 / 팩스: 031)940-4409 / [daram1022@korea.kr](mailto:daram1022@korea.kr)

#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